#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제규정

2012. 01. 25 개 2012, 05, 30 개 2012, 12, 05 개 2013. 05. 02 개 2014. 03. 20 2015. 01. 19 개 2015. 05. 18 개 2017. 02. 08 개 2017. 05. 16 개 2017, 07, 14 개 2018. 10. 17 개 2020. 12. 22 걔 2021. 01. 28 개 2021. 04. 28 개 2022. 07. 29 2022. 09. 20 개 개 정 2023, 02, 07 개 정 2023. 07. 18

## 제1장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"산학협력단"이라 한다)의 「정관」 제8조 및 「아주대학교 직제규정」 제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직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산학협력단의 직제는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」 및 기타 관련규정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 2 장 조 직

제3조(조직) ① 산학협력단에는 고유목적 달성을 위하여 산학기획팀, 산학지원팀, 산학재무팀, 산학구매팀, 산학감사팀, 산학사업팀을 둔다. 〈개정 2012.05.30., 2017.02.08., 2018.10.17., 2020.02.28., 2022.09.20., 2023.07.18.〉 또한 특별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창의산학교육원과 신산업기술혁신원 및 기술사업화센터를 둔다. 〈개정 2012.12.05., 2014.03.20., 2015.01.19. 2017.05.16., 2020.02.28., 2022.09.20., 2023.07.18.〉

② 창의산학교육원장과 신산업기술혁신원장은 업무를 위임받은 부단장이 겸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업무 상 필요 시 따로 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학교법인 이사장이 보한다. 〈개정 2014.03.20. 2017.05.16., 2020.02.28., 2022.09.20.〉

- ③ 창의산학교육원과 신산업기술혁신원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전문조직을 둔다. 각 산하조직별로 장을 두고,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5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학교법인 이사장이 보한다. 단, 수행사업의 특수목적달성을 위해 특별임용교원이나 계약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학교법인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. 〈개정 2012.12.05., 2014.03.20. 2017.05.16., 2020.02.28. 2021.01.28., 2022.09.20.〉
  - 1. 창의산학교육원 산하
    - ① 현장실습지원센터 〈신설 2014.03.20.〉
    - ② 창업교육센터 〈신설 2014.03.20.〉
  - 2. 신산업기술혁신원 산하
    - ① <삭제 2020.02.28.>
    - ② 기업지워센터
    - ③ 〈삭제 2020.02.28.〉
    - ④ <삭제 2022.09.20.>
    - ⑤ 공유협업센터 〈신설 2022.09.20.〉
- ④ 기술사업화센터장은 산학협력단장 직속의 기술사업화정책관(CBO; Chief Business Officer)이 겸한다. 기술사업화정책관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5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학교법인 이사장이 보한다. 단, 수행사업의 전문성 강화 및 특수목적달성을 위해 특별임용교원이나 계약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학교법인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. 〈신설2023.07.18.〉
- ⑤ 산학협력단의 팀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, 아주대학교 소속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학교법인 이사장이 보한다. 다만,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,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학교법인 이사장이 보한다. 〈신설 2012.05.30.〉〈항 번호 변경 2023.07.18.〉
-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조직에 대한 기구는 별표 1과 같으며, 조직별 업무분장 및 업무상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 〈개정 2012.05.30., 2012.12.05., 2013.05.02., 2014.03.20., 2015.01.19., 2015.05.18., 2017.02.08. 2017.05.16., 2018.10.17., 2020.02.28., 2021.04.28., 2022.09.20., 2023.07.18.〉〈항 번호 변경 2023.07.18.〉

#### 제4조(단장 및 부단장 등)

-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, 총장의 지도·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단장은 정관 및 규정류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직원을 임면한다.
- ③ 산학협력단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, 부단장의 위임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〈개정 2022.09.20.〉
- ④ 제3항에 의거 의료원 산학연협력업무의 효율적인 실무관리를 위해 의료 산학협력 부단장을 따로 두며, 의료원 첨단의학연구원장이 당연 겸직하여 관장(管掌)하도록 한다. 〈신설 2014.03.20.〉 〈개정 2015.05.18.〉
- ⑤ 산학협력단장 직속으로 기술사업화정책관(CBO; Chief Business Officer)을 따로 두어 기술사업화

센터장을 당연 겸직토록 하며, 비즈니스 역량 강화 및 우수성과 발굴기획, 기술이전 등 대학 내 기술 사업화 업무를 정책적 실효적으로 총괄조정토록 한다. 〈신설 2023.07.18.〉

- ⑥ 단장 및 부단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직제규정 및 인사관리 제 규정에 따른다. 〈신설 2022.09.20.〉 〈항번호 변경 2023.07.18.〉
- ⑦ 기술사업화정책관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인사관리 제 규정에 따른다. 〈신설 2023.07.18.〉

제5조(직원 및 연구원 등) ① 산학협력단이 임용하는 직원 및 연구원의 임면, 보수,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하며, 본 대학교 총장(이하 "총장" 이라 한다)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다.

- ②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 및 연구원으로 하여금 본 대학교의 교육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대학교 교수, 일반직원 및 연구원 등을 산학협력단으로 배속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배속된 자는 본 대학교 신분을 유지한다.
- ④ 산학협력단에 근무 배치하는 직원의 직군별 구분과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, 연구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2.12.05., 2014.03.20., 2015.01.19., 2017.02.08., 2020.12.22., 2023.02.07.>

**제6조(감사의 운영)** ① 산학협력단에는 1인의 감사를 두어 운영하며, 산학협력단 정관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토록 한다.

② 산학협력단 자체감사 수행 시의 기준과 시행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「아주대학 교 자체감사규칙」을 준용하여 진행한다.

## 제 3 장 협의회 및 위원회

제7조(산학연협력관련 협의회) 산학협력단과 산학연협력에 참여하는 단체 및 산업체 등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1. 산학연협력사업의 공동 수행
- 2. 산학연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
- 3. 산학연협력 담당자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
- 4. 산학연협력의 촉진 및 산학연협력 성과의 홍보

제8조(위원회 활동) ① 산학협력단에는 그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심의 및 자문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1.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: 중요 운영사항의 심의 및 자문
- 2.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: 저작물 및 직무발명 등에 의한 지적재산권 관리, 운영사항 심의
- 3. 산학협력단 규정류 자문위원회: 규정류 제 개정 사항에 관한 자문
- ②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의 장으로 정한다.

③ 기타 운영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필요 시 제반위원회를 구성・운영할 수 있으며, 각 위원회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주대학교 「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」 을 준용한다. 〈신설 2012.12.05.〉

# 제 4 장 운영위원회

**제9조(구성)** ①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(이하 '운영위원회'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〈개정 2012.05.30., 2022.07.29.〉

- ② 위원은 단장이 추천한 교내외 인사를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, 연구정보처장, 기획처장 및 의료 산학협력 부단장(의료원 첨단의학연구 원장), 산학협력단 부단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 〈개정 2012.05.30., 2014.03.20., 2015.05.18., 2017.07.14.〉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- 1. 산학협력단의 기본운영 방침과 사업계획
- 2.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3. 차입금 및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- 4. 산학협력단 정관의 변경,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5. 산학협력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제11조(회의 소집과 의결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단, 위원장의 유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정보처장, 기획처장, 위원 중 호선된 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 〈개정 2017.07.14.〉

-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- 1. 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- 2. 산학협력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감사 가 소집을 요구 한 때
- ③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⑤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.

## 제 5 장 보 칙

제12조(자문 및 위탁) ① 단장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산학협력단 직원 이외의 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, 일정한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 또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- (2) (경과조치) 이 규정사항에 의한 제3조(조직)의 운영은 2011년 10월 0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- (2) (경과조치)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#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과 관련한 창업보육센터의 소속변경은 대학의 관련규정 개정 시기에 맞추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〈산학기획팀-285: 2021.04.28.〉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〈산학기획팀-798: 2022.07.29.〉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# 부 최 〈산학기획팀-1183: 2022.09.20.〉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산학기획팀-2318: 2023.02.07.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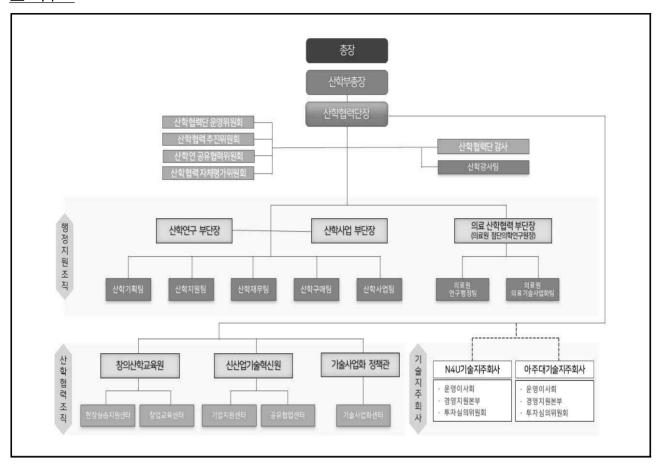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〈산학기획팀-1254: 2023.07.18.〉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# 〈별표 1〉 기구표 및 직원정원표

# □ 기구표



# □ 직원정원표

	직 명	직군별 정원(명)							
직 급		전문직					OH TO TO LATE	게이다	비고
		변리사	공인회계사	기술마케팅	전산분0;	기타분야	연구관리직	계약직	
D	책임매니저						2		아주대학교 소속 보직자 및 정규직원 근무자는 학교의 정원 기준에 따름
С	선임매니저						2		
В	전임매니저						2		
А	매니저						6		
소 계		1	1	2	2	8	12	44	
합 계		70							